부동산·건설대학원 운영 내규

제정 : 2018. 04. 20.
개정 : 2023. 07. 11.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부동산・건설대학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교과과정

제2조(교과과정 편성) ① 교과과정은 학과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・건설대학원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 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② 교과목은 2학점 편성한다.

제3조(개설 및 강의) ① 교과목은 학년 구분 없이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동일계열은 학과간 100% 교차수강 가능하고, 부동산계열과 건설계열간의 교차수강은 전체 학기 중 자신이 취득할 총학점의 50%내에서 가능하다.

② 학과주임교수는 신규교과목 개설시 강의 시간표 작성 기간에 교과목 개설제안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 학기 개강 전까지 승인을 얻어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.

제 3 장 학위 취득 과정

제4조(과정의 선택) 학위취득과정은 **"논문제출"**과 **"논문대체"**의 두 과정으로 구분한다.

제5조(선택시기) ① 학위취득과정의 선택은 4학기 초 학사일정표상의 신청기간에 하며,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위취득과정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,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5학기 초 학사일정표상의 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대체과목) ① 논문대체과목은 주임교수가 결정하여 대학원장이 이를 승인하며, 5학기 때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6학점을 이수한다.

② 논문대체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대체 각 과목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

제7조(등록금 납부) ① 논문대체 과정자가 추가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해야 할 경우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경우 등록금의 납부액은 수강신청 학점이 3학점 이하일 때에는 수업료 반액, 4학점 이상일 때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4 장 학위취득 자격시험

제8조(자격시험) ① 학위를 취득하려는 자는 부동산·건설대학원에서 시행하는 "학위취득 자격시험"에 합격하여야 한다.

② 학위취득 자격시험은 "외국어시험"과 "종합학력시험"으로 한다.

제9조(외국어시험) ① 외국어시험은 영어시험으로 한다.

② 시험은 1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. (2학기생 부터 응시가능)

③ 성적평가는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.

④ 외국어시험의 면제 기준은 아래와 같다.

공인시험	TOEFL	TOEIC	TEPS
취득점수	IBT:87	750	630
※ 매년 3월1일, 9월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에 한함.			

-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어학연수 실적(최근 5년 이내)
- 영어권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연수 실적(최근 5년 이내)
- 영어권 국가에서 1년이상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 수학실적(최근 5년이내)

제10조(종합학력시험) ① 종합학력시험은 학과주임교수가 주관하여 시행하고, 문제지 및 수험생 개인별 답안지는 담당교수가 보관하고, 성적평가표는 주임교수가 서명한 후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전공과목 18학점 이상(연구지도학점 제외)을 취득한 원생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.

③ 시험과목은 전공분야의 학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과목으로 2개 과목을 주임교수가 선정한다.

④ 성적평가는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불합격 과목에 대해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다.

제 5 장 장학금 및 장학생선발위원회

제11조(장학금) ① 부동산·건설대학원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[별표-1] "부동산·건설대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"을 따른다.

② 장학금 대상자는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간에 장학금신청서와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장학생선발위원회) ①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·건설대학원의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.

②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기능은 신입생 및 재학생의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③ 장학생선발위원은 4인 이상 7인 이내로 부동산·건설대학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부동산·건설대학원장이 된다. 학과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학행정팀장을 간사로 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⑤ 장학생선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장 운영위원회

제13조(운영위원회) 부동산·건설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14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운영위원은 4인 이상 7인 이내로 부동산·건설대학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부동산·건설대학원장이 된다. 학과주임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② 교학행정팀장을 간사로 한다.

제15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입학, 수료, 학위수여 등에 관한 사항

②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③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
④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6조(운영위원회 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7조(운영위원회 회의)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7 장 내규 개정

제18조(내규 개정) 본 내규의 개정은 부동산·건설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 개정상정을 하며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.

부 칙 (2018. 04. 20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18. 4. 20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 10. 24.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 내규은 2019. 10. 24부터 시행한다. 단, 장학금 지급기준은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공무원, 군·경 재직자의 장학금 30% 적용 제외 및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의 장학금 20% 적용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(2022. 04. 18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22. 4. 18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3. 07. 11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2023. 07. 11부터 시행한다.

[별표-1] 부동산·건설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

장학명	지급률	지급대상	비고
학사조교A	수업료의 100%	우리대학 학사조교A	
학사조교A-1	정액	우리대학 학사조교A	
실험실습보조TA	정액	실험실습보조TA(수업조교)	
봉사장학금	본인장학금 포함 수업료의 50%이내	원우회 임원(학기별 10명이내)	
군위탁생 장학금	수업료의 50%	군위탁 추천자(정원외)	
대내장학금 (교직원)	수업료의 100%	본교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 재직 교직원(정규직)► 전후기 최초전형 합격자	
	수업료의 50%	본교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 재직 교직원(정규직)► 전후기 추가전형 합격자	
대내장학금 (교직원-계약직)	수업료의 50%	본교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 재직 교직원(계약직)	
양영장학금	수업료의 50%	학교법인 단국대학 산하 재직 교직원(정규직) 자녀 ► 대학, 단국대의료원, 치과대학 부속병원, 단대부속 중·고등학교	
외국인장학금	수업료의 50%	외국인 및 재외국민(정원외)	
대내장학금	수업료의 50%	본교 동창회임직원, 단국대의료원 재직자(정규직) 단대부속 중·고등학교 교직원(정규직)	
		■ 협약기관 건설안전실무전문가협의회(회원), 경기도건축사회(회원), 한국감정평가협회(감정평가사), 국가철도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	
	수업료의 40%	■ 우리학교와 협약 체결한 기관 중 본 대학원이 인정한 기관 및 기업체 재직자 경기도, 공군본부, 성남시, 수원시, 오산시, 용산구청, 용인시, 용인문화재단, 육군본부, 정보사령부, 지상작전사령부, 천안시, 충청남도, KT, 한국부동산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지사, 한국표준협회, 한솔개발, 해병대사령부, 해양환경공단, 현대건설, 화성시	
		■ 부동산·건설대학원과 협약 체결한 기관 및 기업체 재직자 경기주택도시공사, 성남도시개발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, 수원도시공사, 시흥시, 용인도시공사, 인천도시공사, ㈜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, 한국부동산연구원, ㈜한국토지신탁, 한국자산신탁(주), (사)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	
	수업료의 30%	■ 부동산·건설대학원과 협약 체결한 기관 재직자 우미건설(주), ㈜카카오페이증권	
		우리학교 가족회사 재직자	
	협약내용에 따라 지급	부동산·건설대학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의 장학금 지급률은 각각의 협약내용에 따라 지급한다	
	수업료의 20%	공공기관,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사립학교 교직원, 일반기업체	
	수업료의 15%	개인사업자	
단국장학금	입학금 100%	본교 졸업생(신입생)(학점은행제 졸업자 제외)	